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8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62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2012 ~ 63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3
2012 ~ 64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1
2012 ~ 65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2012 ~ 66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2 ~ 67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47
2012 ~ 68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12 ~ 69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2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 기존의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안 별표 1)

나.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군수가 직접 수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련시설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함

라. 수련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1)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 (2) 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3) 수련시설별 사용료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함
- (4)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음

마.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400백만원 정도(2013년도 예산 확보 예정)

- 인건비, 시설운영비, 보험가입, 프로그램 운영비 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7. 5. ~ 2012. 7. 24.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수련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3.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
5. 청소년의 창작·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5조(운영)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배치)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시설의 장을 두며, 수련시설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에 공무원을 두는 경우, 수련시설의 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련시설운영위원회) 군수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수련시설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별 사용료 기준은 별표 2,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가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을 발행할 경우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료 외에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시설설비) ① 사용자는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물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2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3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4길 60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시 설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1. 실내집회장	1회 3시간	50,000원	- 일반인 기준 - 1시간 초과시 10,000원 가산 - 냉난방기 사용시 20,000원 추가부담 - 토·일요일, 공휴일은 요금의 30% 가산
2. 세미나실	1회 2시간	20,000원	- 일반인 기준
3. 프로그램실	1회 2시간	10,000원	- 일반인 기준
4. 체육활동장	1인 1회	2,000원	- 일반인 기준
5. 야외공연장	1회 2시간	20,000원	- 일반인 기준

□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구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홀	1회 2시간	20,000원	- 일반인 경우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가산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숙박비 (1인1일)	청소년		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 기준: 당일18:00~익일09:00 *식비 및 시설이용료는 별도계산 ○ 이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기준금액의 50%추징 '30분 이상-1시간이내; 기준금액의100%추징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징 ○ 강당 냉난방시설 1시간 사용 시 10,000원 추가부담 ○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행사기기 등의 사용이용료는 수련원의 내부규정 의한다.
	일반		9,000원	
강당	공연사	오전	70,000원	
		오후	100,000원	
		야간	100,000원	
세미나실	행사 교육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50,000원	
운동장	1일	경기	50,000원	
		경기외	100,000원	
수련활동지도료		1회1인 기준	4,000원	

[별표 3]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가 유공자	100분의 50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학교, 청소년단체 주관행사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고 : 면제 또는 감면사유 증빙서류 첨부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기준		비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청소년 수련원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전액 반환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70%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 또는 당일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80% 반환	50% 반환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용역비 등 제비용
 -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기 지원되고 있으며, 월성청소년수련원은 운영비 지원없이 자체수입으로 충당 됨.
-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350	367	379	392	404	1,892
	소계(a)		350	367	379	392	404	1,892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350	367	379	392	404	1,892

※ 물가 상승율(운영비, 인건비 등) 5% 적용
 세입은 일반인 사용료에서 발생하고, 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3. 관련 의견

- 운영방법(직영 또는 위탁)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2013년도 운영 이후 비용절감 등이 검토되어야 함.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윤 용 식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63
----------	----------

제출년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학생 상호간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1)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음
- (2)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 (1)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전 등을 심의
-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의원, 교육공무원, 교장, 교원, 경찰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7. 12. ~ 2012. 8. 0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 및 거창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
 2. 군의회 의원
 3.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이 사임,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전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협의회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는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 용 식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4
----------	-----------

제출일자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나.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확충,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홍보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47백만원(2012년도 예산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8. 09. ~ 8. 29.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로써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중의 사고, 강을 건너는 도중의 사고,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 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군수는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그 밖에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하며,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구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

제10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무복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5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 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8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점검반) ① 군수는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 제22조(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
 -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 제23조(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문,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 2.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 3.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위험표지판, 이동식거치대, 구명환, 구명로프, 인명구조봉 등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나. 관련조문

- 제5조(안전시설 설치·확충), 제8조(안전관리요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국·도비	10	15	15	15	15	70
	군비	37	40	40	40	40	197
	소계(a)	47	55	55	55	55	267
세입	국비	7	8	8	8	8	39
	도비	3	7	7	7	7	31
	소계(b)	10	15	15	15	15	70
총 비용(a-b)		37	40	40	40	40	197

3. 관련 의견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시설물 비치 및 안전요원 확보·배치를 통해 안전거창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작성자 : 재난관리과장 이 동 순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5
----------	-----------

제출년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위험도평가 :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나.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다.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1) 단장은 부군수, 단원은 건축·토목·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등록·관리함
- (2)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음

라.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1)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 실시
- (2)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
 - 위험, 주의, 안전

마.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1)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군본부장에게 제출
- (2) 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 전부를 군본부장에게 제출
- (3) 단장은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수 있음
- (4) 군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 발간

바. 단원 등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1) 위험도평가 시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2)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

사. 경비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경비를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7. 27. ~ 8. 1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군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군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등) ① 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②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하고,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관련 학회·협회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험도평가 실시 통지를 받으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위험도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군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① 군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③ 군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한다.
- 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군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군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 ② 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군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군본부장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에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② 군본부장은 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주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④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⑤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군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군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한다.

제10조(단원 등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단원 및 공무원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주소 :

사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p>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p> <h1 style="margin: 0;">위험!</h1> <p style="margin: 0;">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p> <p>□ 평가자 : □ 평가일시 :</p> <p style="text-align: center;">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p> <p>「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p>
--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p>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p> <h1 style="margin: 0;">주의!</h1> <p style="margin: 0;">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p> <p>□ 평가자 : □ 평가일시 :</p> <p style="text-align: center;">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p> <p>「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p>
--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전!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이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 10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1조 (경비지원)

-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 등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재난관리과장 이 동 순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6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2009.4.01.)되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안 제3장(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06. 13. ~ 7. 0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4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장(제13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친환경농업 육성법</u>」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u>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u>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u> ① ~ ② (생략) ③ <u>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u>제3장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u></p> <p><u>제13조(설치)</u>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설치·운영한다.</p> <p><u>제14조(기능)</u> ①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u> 2. <u>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u> 4. <u>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u> 5. <u>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u>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u></p>	<p><u>제1조(목적)</u> ----- 「<u>친환경농업 육성법</u>」에 따라----- ----- ----- -----</p> <p><u>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u>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u> <u>2.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장</u> <u>3.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자</u> <u>4.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u> <u>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u> <p><u>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u></p> <p><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u>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u></p> <p><u>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제21조(심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제23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u></p>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4조제1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함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7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제6조)
- 다.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일시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8조)
- 라. 유용미생물 공급제한 및 공급장려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300백만원(2013도 예산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7. 26. ~ 8. 1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 ②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

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군수가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판매금액 입금)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 ②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00년)	3차년도 (00년)	4차년도 (00년)	5차년도 (00년)	합계
총 비용(a - b)	300,000					300,000
세출	순수배양기	300,000				300,000
	소계(a)	300,000				300,000
세입	-	-				-
	소계(b)	-				-

3. 관련의견 : 축산용 생산을 위한 배양장비 확충이 요구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규격 및 단위	단가(천원)	수량	사업비(천원)
순수멸균 미생물배양기	1,200 ℓ / 식	100,000	3기	300,000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8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2004. 01. 07. 이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조정하여 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2, 3, 4)

(1) 급수 업종별 요율표(별표 2)

- 상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494원/m³ ⇒544원/m³)
- 급수 업종 축소 : 4종 ⇒ 3종

(2) 업종 구분표(별표 3)

- 업종 축소에 따른 별표 조정(대중탕용을 일반용으로 편입)

(3)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별표 4)

-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 인상(13mm : 360원 ⇒750원 등)

나.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8조, 제46조)

- (1)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안 제8조)
- (2)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 ⇒ 「수도법」 제71조(안 제46조)

다.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라. 미비된 조문의 개정 및 신설(안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41조)

- (1)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관련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 (2) 동과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대금 납부주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 (3) 급수표지 별지 서식 지정(안 제41조)

마. 옥내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안 제37조)

- 감면기간 관련 단서조항 신설 : 최대 3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6.14. ~ 2012.7.0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전·그 밖의”를 “수도꼭지·그 밖의”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다음의 4종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조변경”을 “구경변경”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를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도법 시행령」 제30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
2.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

- ②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⑤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사용자 등”을 “상수도사용자 등”으로 한다.

제3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제1항 중 “급수표지”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표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6조 중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한다.

별표 2·3·4,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u>수도전· 그 밖의</u>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p> <p>2. ~ 10.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u>수도꼭지· 그 밖에</u>----- -----</p> <p>2. ~ 10. (현행과 같음)</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u>다음의 4종으로</u> 구분한다.</p> <p>1. (생략)</p> <p>2. 개조공사 : 급수관 <u>구조변경</u>,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p> <p>3 ~ 4. (생략)</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u>다음 각 호와 같이</u>-----</p> <p>1. (현행과 같음)</p> <p>2.-----<u>구경변경</u>-----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③ (생략)</p> <p>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u>흡수정 설치</u>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흡수정 이하의 장치</u>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p> <p>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u>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8조(공사의 시행) ① (생략)</p> <p>1 ~ 2. (생략)</p> <p>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u>수도법 시행령</u>」 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8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수도법 시행령</u>」 제24조의2-----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p> <p>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p> <p>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④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군이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 2.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 <p>②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p> <p>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p> <p>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⑤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 2. (생략) 3.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경 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 할 경우</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5항----- -----</p>
<p>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생략) ②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 ④ (생략)</p>	<p>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수도사용자 등-----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41조(급수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급수표지를 발급한다. ② (생략)</p>	<p>제41조(급수표지) ① -----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표지----- ----- 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② (생략)</p>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 -----사람----- -----범위에서----- -----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 ----- ② (현행과 같음)</p>
<p>제46조(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46조(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 ----- ----- ----- -----</p>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m ³)	m ³ 당 단가(원)
가정용	1 ~ 20	544
	21 ~ 30	737
	31이상	963
일반용	1 ~ 30	668
	31 ~ 50	835
	51 ~ 100	974
	101 ~ 300	1,115
	301이상	1,254
산업용	1m ³ 당	652

[별표 3]

업종구분표(제28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1.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일반 대중 목욕장업 포함)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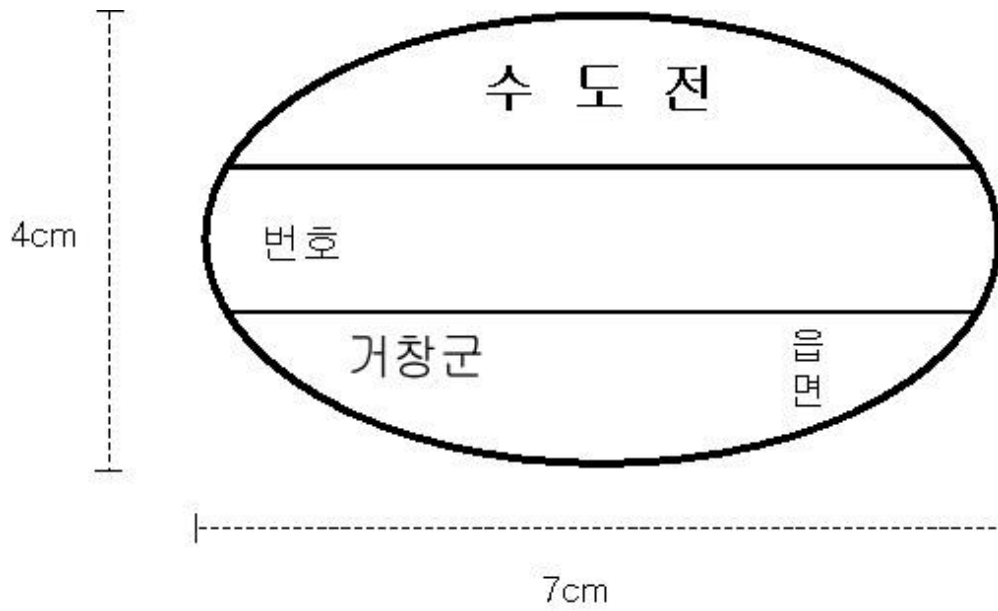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13mm	750원	
20 "	2,110원	
25 "	3,390원	
32 "	6,040원	
40 "	10,190원	
50 "	15,630원	
75 "	37,910원	
100 "	64,640원	
150 "	140,840원	

[별지 제2호서식]

백색 바탕 황색 글씨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일 교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9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04.01.07.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04%에 불과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부 「하수도조례 표준안」('10.9.30) 및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군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하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94원/m³ ⇒ 104원/m³)
- 하수도 업종 축소 : 4종 ⇒ 3종

나.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리 개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7조 ~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4조제6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30조)

(1) 중수도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제11조)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안 제26조)

(3)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안 제13조제1항)

(4)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안 제24조제6항)

(5)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의 규정(안 제28조제2항)

(6) 「지방세법」의 예 ⇒ 지방세 징수의 예(안 제30조)

다. 하수도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 단서, 별표 4, 별표 5)

(1)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 신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산정(안 제22조 단서, 별표 5)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예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6. 14. ~ 7. 04.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 서식”으로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17조제2호다목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 6”을 “별표 5”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하수도법 시행령」, 규칙”을 “법, 영,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별표 7”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중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를”로 한다.

제30조 제목 “「지방세법」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하며, 별지서식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규칙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규칙 지정기준) ----- -----제15조제2항</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 (생략)</p> <p><신 설></p> <p>3. (생략)</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사용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p> <p>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중수도를 관리하여야 한다.</p> <p>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p> <p>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p> <p>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p> <p>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p>	<p><삭 제></p>
<p>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p> <p>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p> <p>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p>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p> <p>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p> <p>② ~ ⑤ (생략)</p>	<p>제11조(공사시행) ① -----</p> <p>-----</p> <p>-----</p> <p>1. -----</p> <p>-----</p> <p>----- 「하수도법 시행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p> <p>-----</p> <p>3. -----</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표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광경(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p> <p>----- 별지 서식-----</p> <p>-----</p> <p>-----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 2. (생략)</p> <p>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u>별표 5</u>에 따름</p> <p>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u>별표 6</u>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u>범위 안에서</u>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p> <p>5. ~ 6.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 <u>별표 4</u> -----</p> <p>4. -----</p> <p>----- <u>별표 5</u> -----</p> <p>----- <u>범위에서</u> -----</p> <p>-----</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1. (생략)</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u>별표 6</u>에 따라 산정함</p>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u>별표 5</u>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u>법·「하수도법 시행령」·규칙</u>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법, 영, 규칙</u> -----</p> <p>-----</p> <p>-----</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u>별표 7</u>에 따름</p> <p>2. ~ 3. (생략)</p> <p>② ~ ⑤ (생략)</p> <p>⑥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된 분뇨 처리 수수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 -----</p> <p>1. ----- ----- -----<u>별표 6</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지방세기본법」</u>----- -----</p>
<p>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범위에서</u>----- -----</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p> <p>2. <u>제7조에 따라 중수도</u>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p> <p>3. <u>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u>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p> <p>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u>재이용수</u>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u>별표 8</u>과 같다.</p>	<p>제26조(감면) ① ----- ----- -----</p> <p>1.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p> <p>2. <u>중수도</u>----- -----</p> <p>3. <u>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u>----- -----</p> <p>4. ----- -----</p> <p>② ----- -----<u>재처리수</u>----- -----<u>별표 7</u>-----</p>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126조까지를 -----</p>
<p>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p>	<p>제30조(준용) ----- ----- ----- ----- 지방세 징수 -----</p>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밖에() 배제				
	설치위치		읍·면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밖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div>							
거창군수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이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구분(m ³)	m ³ 당 단가(원)	비고
가정용	1 ~ 20	104	
	21 ~ 30	143	
	31 이상	192	
일반용	1 ~ 30	121	
	31 ~ 50	159	
	51 ~ 100	194	
	101 ~ 300	224	
	301 이상	278	
산업용	1톤당	125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5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m³/일)

구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 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 기존 건 축물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6	9	-	미부과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 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봄		
						7	18	-			
						11	22	11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 <10 미부과
								7	15	5	(A)+(B)+(E) >10 초과량 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 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4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m³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1회의 신축,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bigcirc \text{ m}^3 \text{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triangleright a = \left(1 + \frac{\quad}{100} \right)^n$$

$\triangleright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함.
-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22원	15원	137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4,945원	1,125원	16,0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011원	150원	1,161원

[별표 7]

중수도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6조제2항)

업종	구분	감 면 비 율		비 고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일 반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산 업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일 교